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85

발의연월일: 2021. 7. 28.

발 의 자:김도읍・김태흠・윤한홍

태영호 • 권영세 • 이헌승

추경호 · 양금희 · 조수진

신원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 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 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 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상이유족 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여러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7조제1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4호 중 "19세"를 "25세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4호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	제37조(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
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)	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)
①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	①
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	
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	
를 상실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	4
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	
녀가 <u>19세</u> 가 된 경우	<u>25세</u>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4호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
	이 인정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
	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
	권리를 상실한다.